

[서식 예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, 보관인 선임 등

(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)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및 추심명령,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◆◆◆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구금액: 금 ㅇㅇㅇㅇ원정

○○가정법원 20○○드단○○○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원금 가운데 일부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○○○원

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할 채권의 표시 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.

신 청 취 지

1.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○○지방법원 20○○카단○○○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


청구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.
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무자는 위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○○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을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한다.
- 5.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일자를 송달원인으로 채무자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한다.

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- 1. 위 청구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20○○드단○○○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사건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판결원금 가운데 일부금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 ○○.까지 연 ○○%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입니다.
- 2. 채무자는 그 동안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 으로서 위 청구금액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 다.

첨 부 서 류

1.	가압류결정문	1통
1.	가압류결정문송달증명원	1통
1.	집행력 있는 판결정본	1통
1.	판결정본송달증명원	1통
1	송달료납부서	1통



 20○○.
 ○.
 ○.

 위 채권자
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[별지]

목 록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완 납한 뒤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.

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34㎡. 끝.



제출법원	※ 아래 참조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223조, 제244조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		
^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(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)			
	·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), 재판을 고지 받은 날			
불복절차 및	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.			
기간	·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에 대한 불복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하여야 함			
	(민사집행법 제16조).			
ul Ó	·인지액 : ㅇㅇㅇ원(☞민사접수서류	에 붙일 인지액 참조)	
비용	·송달료 : ㅇㅇㅇ원(☞적용대상사건	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
	•부동산에 관한 권리	이전청구권의	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	
	재지의 지방법원은	채권자 또는 저	세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	
	관인을 정하고 제3	채무자에 대하여	ᅧ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	
	의의 권리이전등기	절차를 보관인에	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함.	
기 타	위의 경우에 보관인	은 채무자명의	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	
	채무자의 대리인이	됨(민사집행법	제244조제2항, 제3항).	
	· 보관인에 대한 권리이진	선명령은 강제력이	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	
	 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여	에 협력하지 않을	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	
	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	하여야 함(민사집행]법 제244조제4항).	

- ※ 제출법원{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(민사집행법 제21조)}
 - 1. 채무자의 보통재판적(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)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)
 - 2.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단서)
 - 3.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)
 - 4. 그러나 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의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(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었는 곳의 지방법원)의 관할구역 내에 목적부동산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과 보관인선임결정과 권리이전명령을 내린법원이 다를 수 있고, 두 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보



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. 또한, 보관인선임과 권리이 전명령의 신청은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다른 때에는 각각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.